

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(제12조의2제1항 관련)

체류자격 (기 호)	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
영주 (F-5)	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대한민국 「민법」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. 주재(D-7)부터 20. 특정활동(E-7)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- 국민 또는 영주자격(F-5)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(F-5)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- 별표 1의2 중 26.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「국적법」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(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)을 갖춘 사람 - 종전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. 4. 18. 공포·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)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(F-2) 체류자격(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가.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
서 영주자격(F-5)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
사람

나.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
득한 사람

8.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
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
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, 영주자격(F-5) 신청
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
의 임금을 받는 사람

9. 과학·경영·교육·문화예술·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
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
람

10.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
하는 사람

11.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
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

12. 별표 1의2 중 29.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취업활
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, 산
업 분야의 특성,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
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13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
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
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
인정하는 사람

14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
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
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
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(법무부
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)

15. 별표 1의2 중 11. 기업투자(D-8) 다목에 해당하는 체
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
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
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

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
16.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
17. 별표 1의2 중 11. 기업투자(D-8)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18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

19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